

美國의 漁業保存・管理法과 韓美 漁業協定

楊 世 植*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of 1976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Fisheries off the Coasts of The United States

Se-Shik YANG*

I. 緒 言

美國은 新海洋法의 成立을 기다리지 않고 200海里의 漁業專管水域를 美國沿岸에 設定하는 1976年 漁業保存管理法(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of 1976)을 1976年 4月 13日에 公布하여 1977年 3月 1日을 期하여 發効하게 하였다.

公海上에서는 自國船舶을 除外하고 如何한 國家도 그 管轄權行使가 容認될 수 없다는 것이 傳統的인 公海概念이라고 한 때 200海里의 沿岸國의 管轄水域—그管轄權의 內容은 漁業에 關한 한 領海의 그것과 다를 바 없나—을 國內法으로써 宣布한 本法은 이와 한 傳統的인 公海制度에 正面으로挑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本法成立後의 國際海洋法秩序의 展開過程은 本法이 實質的 効力を 가지고 施行되고 있고 또 將來에 疑心의 余地 없이 施行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本法이 가지고 있는 實質的 効力의 근거로서 本法의 成立時期가 新海洋法誕生의 前夜라고 하는 점, 本法이 海洋法會議單一草案에 있는 200海里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内容과 漁業專管水域개념에 있어서는 双生兒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이 200海里의 연안국의 어업專管水域에 관해서는 航海국의 거의 전부가 친동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가지고 있는 世界的인 영향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法이 가지고 있는 가장 主要한 意義는 그것이 미친 世界的인 衝擊波에 있다. 本法은 新海洋法條約의 締結을 기다리지 않고 종문 穎문 마르 새로운

世界海洋秩序 形成에 있어서의 一大轉機를 마련하였으니 그것은 海洋漁業資源의 國際的 分割의 第一步를 디디게 하는 것이었다는 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本法이 直接的으로는 美國沿岸에 出漁하는 遠洋漁業界的 關心事인 것은勿論일 것이다 그것이 世界海洋秩序의 變遷의 軸을 이루고 있다는 意味에서 海洋國으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있는 現時點의 韓國에서 全韓國民의 共同의 關心事이기도 한 것이다.

以下에 간단히 本法의 내용과 本法에 基하여 77年 1月 4日에 締結된 韓·美漁業協定의 內容을 考察하고자 한다.

II. 美國의 漁業保存・管理法의 內容

本法의 주요한 내용을 다음에 간추려 보고자 한다.

1. 200海里內外에 있어서의 排他的 漁業管理權과 그對象魚種

美國沿岸에서 200漁里까지를 漁業保存水域으로 하고 이水域내의 모든 魚類에 美國의 排他的 漁業管理權이 미친다.

여기에 주의하여야 할 점은 美國의 淡水 또는 河口水域에서 產卵하고 外洋水域에 回遊하는 遷河性魚種과 大陸棚漁業資源—腔腸動物 6종, 甲殼類 15종, 軟體動物 9종, 海綿動物 4종이 指定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追加指定할 수 있다—에 관해서는 이 保存水域 以遠에서도 美國의 排他的 漁業管理權이 미친다고 하는 点이다. 200海里 以遠의 水域에서 이러한 遷河性魚種과 大陸棚漁業資源을 對象으로 漁業에 從事하는 경우를 刑事犯으로 处罰하고 있으므로 本法의 200海里水域

* 釜山水產大學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of Busan.

楊世楨

밖에 까지도 排他的 漁業管理權을 設定하고 있는 点에 特別한 주의를 要한다.

高度回遊性 魚種一다방어類를 말한다—는 排他的 漁業管理權이 미치는 對象魚種에서除外된다.

2. 漁業管理計劃

漁業management를 위하여 地域漁業管理理事會를 두며 漁業management計劃을 作成한다.

(1) 地域漁業管理理事會(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s)

美國沿岸의 200海里 漁業保存水域을 8개 水域으로 나누고 각각의水域에 다음과 같은 地域漁業管理理事會를 둔다.

① 뉴 인그란드 理事會(New England Council)
構成州는 Maine, New Hampshire, Massachusetts, Rhode Island, Connecticut이다.

② 中部大西洋 理事會(Mid-Atlantic Council)
構成州는 New York, New Jersey, Delaware, Pennsylvania, Maryland, Virginia이다.

③ 南部大西洋 理事會(South Atlantic Council)
構成州는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Georgia, Florida이다.

④ 加리브海 理事會(Caribbean Council)
構成州는 Virgin Islands, Puerto Rico이다.

⑤ 백서고灣 理事會(Gulf Council)
Texas Louisiana, Mississippi, Alabama, Florida가 그構成州이다.

⑥ 太平洋 理事會(Pacific Council)
California, Oregon, Washington, Idaho가 그構成州이다.

⑦ 北太平洋 理事會(North Pacific Council)
Alaska, Washington, Oregon이 그構成州이다.

⑧ 西部太平洋 理事會(Western Pacific Council)
Hawaii, American Samoa, Guam가 그構成州이다.

이러한理事會의職務는 ① 그 관할구역內의 각漁業에 관한 漁業management計劃 및 各計劃에 대한修正을 作成해서 商務長官에 提出하고, ② 外國漁業의申請書에 대한 見解를 作成提出하며, ③ 水域內의各漁業의適正生産量과 外國漁業의總許容漁獲水準에 관한 評價 및 明細를 繼續的으로 檢討改訂하며, ④ 漁業의 保存 management를 위한 必要適切한 其他の活動을 하며 各種의 報告書를 提出하여 公聽會를 開催하는 따위이다.

各理事會는 投票權을 가진理事와 投票權이 없는理事로構成되는데, 投票權을 가진理事의 $\frac{2}{3}$ 에 가까

운數가 商務長官의任命케이스이다.

이 밖에도 商務長官은 漁業management理事會가 作成한 漁業management計劃에 대한 不承認, 部分的 承認, 變更의 要請 등으로 影響力を行使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과연 그렇다고 해서 政府의 意圖가 곧 直線的으로 各理事會에反映된다는 保障이 없는 것은 美國의 民主的慣行과 結付해서 考慮에 넣어야 할 点이며 이것이 美國務省만을 交渉相對로 하여야 하는 各國의 不安의 原因이기도 하다.

(2) 漁業management計劃作成

各理事會의 主된 職務中의 하나가 漁業management計劃의 作成인데 이 漁業management計劃은 本法 301節에 規定되어 있는 7개 조목의 國家基準과 이 基準에 基한 商務長官指針에 의하여 作成된다.

國家基準中 가장 important한 대목은 301節 (a)(1)에 規定된 適正生産量에 관한 것이며 漁業management計劃等에 있어서의 漁業의 '保存 및 管理措置는 魚獲을 防止함과 함께 各漁業에서 繼續的으로 適正生産量을 達成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때의 適正(optimum)이라는 말은 (A) 持久食糧生產 및 Recreation 漁業의 機會에 關하여 國家에 最大의 全体的 利益을 提供하고 (B) 關連된 社會的, 經濟的, 或은 生態學的 要素에 의하여 調整되는 漁業의 最大持續生產을 基礎로 하여 定하여지는 魚類의 量을 말한다고 한다.

要컨대 各理事會는 이러한 國家基準 또는 이것에 基礎를 둔 商務長官指針에 의해서 漁業management計劃을 作成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그 作成이 義務의인 必要條項과 裁量에 속하는 裁量條項이 있다. 必要條項中의 主要한 것은

(1) 國家基準과 기타의 適用되는 法律과 合致하는 外國漁業 및 美國漁業을 規制할 必要한 保存 및 管理措置

(2) 당해 이업의 現況과 將來의 상황, 最大持續生産量 및 適正生産量의 評價와 明細, 이適正生産量을 美國漁船이 漁獲하는 年間能力 및 慾求의 評價와 明細, 適正生産量中 年間 美國漁船에 의하여 漁獲되지 않고 外國漁業에 漁獲하게 할 수 있는 部分의 評價와 明細이다.

要컨대 美國漁船의 漁獲實績에 將來의 漁獲希望量까지 간안한 漁獲量은 適正生産量에서 控除한 殘餘部分이 外國漁業에 許容되는 漁獲量이 된다.

裁量事項으로서는

(1) 漁業의 期間, 水域, 船舶, 漁具에 의한 制限, 漁業의 保存, 管理를 위하여 水域, 魚種, 休長, 尾數重量, 性別, 混獲 total production量, 기타의 요소에 基한 필요

美國의 漁業 保存·管理法

하고 적절한 漁獲量 制限

(2) 適正生産量을 達成하기 위하여 당해 漁業에의 入漁制度를 設定할 수 있는데 이 때에 考慮에 넣어야 할 사항은 과거의 參加度, 經濟的 依存度, 既存投資 및 기타 要因들이다.

3. 商務長官의 措置

이렇게 해서 作成된 漁業管理計劃은 商務長官에 提出되어 60日 以內에 承認, 不承認 또는 部分的 不承認의 決定이 있게 되고 不承認 또는 部分的 不承認의 경우는 變更要請을添附하여 당해 理事會에 通知한다.

漁業管理計劃을 實施하는 全般的 責任은 商務長官에 있다. 다만 이 法規 또는 이 法에 의하여 發布된 规則 또는 許可書에 관한 國東에 관해서는 沿岸警備隊가 所屬하는 省의 長官과 責任을 共同으로 진다.

이 밖에도 商務長官은 包括的인 漁業調查計劃을 開始, 繼續하여 漁業管理計劃에 대한 緊急規則 등을 公布할 수 있다.

4. 行政國際漁業協定

漁業保存水域內에서의 漁業 또는 保存水域 以遠에 있어서의 週河性 魚種 혹은 大陸棚 漁業資源을 對象으로 하는 漁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行政國際漁業協定에 의하는 것과 既存의 國際漁業協定에 의하는 두 경우가 있는데, 既存의 國際漁業協定에 의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해당사항이 없고 또 美國은 既存의 國際漁業協定을 行政國際漁業協定으로 單一化할 것을 目標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行政國際漁業協定에 의하는 경우만을 보기로 한다.

(1) 行政國際漁業協定에 要求되는 條件

漁業保存水域內에서의 漁業 및 保存水域 以遠의 週河性 魚種 혹은 大陸棚 漁業資源을 對象으로 하는 漁業을 할 수 있는 主된 경우는 美國과 行政國際漁業協定(Governing International Fishery Agreements)을締結하여 이 法에 정한 美國의 排他的 漁業管理權을 認定하는 경우인데 이 協定에는 ① 本法 및 漁業管理計劃을 實施하기 위하여 商務長官이 公布하는 그든 規則을 遵守한다. ② 모든 國東節次를 충수한다. ③ 미국의 observer의 승선을 인정하고 그 費用을 부담한다. ④ 許可料(license fee)를 선불한다. ⑤ 美國이 發布하는 法的 措置의 受理 및 응답의 權限이 주어진 代理人를 美國內에 指名한다. ⑥ 당해國의 漁船에 의한 미국시민의 漁船, 漁具, 漁獲物의 損失 및 損害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진다는 公約이 包含되어야 한다.

(2) 外國漁業의 總許容 漁獲水準

外國漁業의 총許容 漁獲水準은 당해 漁業의 適正生

產量의 범위 내에서 미국선박에 의하여 漁獲되지 않는 殘餘部分이며 諸外國間의 合當量은 國務長官이 商務長官과 協力하여 決定하는데 이 決定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에 넣는다.

① 당해 國의 漁船이 그 漁業에 傳統的으로 종사하였는가 및 그 程度,

② 당해 國이 漁業調査 및 漁業資源의 確認에 관하여 美國과 協力하여 왔는가 또 實質的으로 공헌하여 왔는가,

③ 당해 國이 國東 및 漁業資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미국과 協力하여 왔는가, 또 實質的으로 공헌하여 왔는가.

④ 國務長官이 商務長官과 협력하여 適當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사항

이 밖에도 相互主義 原則에 의하여 美國에서의 漁業許可를 얻고자 하는 外國은 實質的으로 동등한 漁業恃權을 美國漁船에 부여하여야 한다.

(3) 行政國際漁業協定에 基한 申請과 許可

1977年 3月 1日 이후는 有効한 許可書를 船上에 所持하지 않는 한, 高度回遊性 魚種을 除外하고 漁業保存水域內의 모든 漁業, 保存水域 以遠의 週河性 魚種 또는 大陸棚 漁業資源을 對象으로 하는 漁業에 從事할 수 없다. 行政國際漁業協定을締結한 外國이 漁業許可書를 申請하고 發給받는데 대한 資格要件, 節次, 기타의 適用規定 및 制裁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① 許可申請書의 제출

美國과 行政國際漁業協定을 締결한 外國은 保存水域內에서의 漁業 및 同水域 以遠의 週河性 魚種 또는 大陸棚 漁業資源을 對象으로 하는 漁業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自國의 선박에 대한 許可申請書를 每年 國務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申請書에 明記한 事項은 다음과 같다.

a) 許可書를 구하는 각 漁船의 船名 및 正式番號 또는 기타의 識別資料(identification) 및 船主의 住所, 姓名

b) 噸數, 貨載容量, 速度, 加工設備, 漁具의 種類와 数量 및 각 船舶의 特징에 관하여 長官이 요구하는 기타의 관連情報

c) 당해 선박이 조업을 希望하는 漁業 種類

d) 許可期間中の 각 船마다의 諸定漁獲尾數 또는 噌數

e) 당해 漁業이 行하여지는 海域 및 時期 또는期間 이 외에 國務長官이 요구하는 기타의 관連情報 및 資料가 包含된다.

② 許可節次

a) 國務長官은 申請書가 前記한 内容의 요구를 充足한 것일 때에는 官報에 그 申請을 登載하고, 곧 그 申請書에 자신의 見解 및 勸告를 첨부해서 商務長官에게 傳達하고 申請書의 寫本은 각자 해당 地域漁業管理理事會 및 沿岸警備隊가 속하는 省의 長官에 傳達하여 또 그 資料의 寫本을 下院의 海運漁業委員會, 上院의 商業委員會 및 外務委員會에 傳達한다,

해당 地域漁業管理理事會는 申請書를 受領후 45日 이내에 申請書에 관한 見解一し정된 漁業에 관한 승인, 부과할 制限 條件에 대한 勸告 등一를 商務長官에게 提出한다.

b) 商務長官은 國務長官과 團東에 관해서는 沿岸警備隊가 소속하는 省의 長官과 協議하여야 하며, 이를 長官의 見解와 勸告 및 理事會가 提出한 見解를 고려한 뒤에 申請書의 漁業이 이 法律의 要件를充足시킨다고 決定한 경우에는 그 申請을 승인한다.

승인이 있은 후 商務長官은 그 申請에 의하여 반금되는 許可에 포함되는 制限條件를 설정한다.

商務長官은 승인된 각 申請書의 寫本 및 設定된 制限, 條件을 관계 外國에 전달하기 위하여 國務長官에게 전달하며, 沿岸警備隊가 속하는 省의 長官, 당해 漁業에 관한 있는 地域漁業管理理事會, 下院의 海運漁業委員會 및 下院의 商業委員會 및 外交委員會에 대하여도 傳達한다,

c) 不承認

商務長官이 그 申請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不承認의 사실 및 그 理由를 國務長官에게 신속히 通報하여야 하며 國務長官은 不承認 및 그 理由를 당해 外國에 通報한다. 당해 外國은 그 理由를 檢討하여 다시 修正 申請을 할 수 있다.

d) 許可料(fee)

許可書를 發給받은 外國漁船은 許可料를 商務長官에게 先拂하여야 하는데 商務長官은 國務長官과 協議해서 許可料一覽表를 作成, 公表하여 各國에 차별없이 適用하여야 한다. 이 許可料는 決定하는데 있어서 商務長官은 漁業의 保存管理, 調査研究, 行政, 團東 및 기타의 費用을 考慮에 넣을 수 있다. 이 때의 保存管理, 調査研究, 기타의 費用이 경우에 따라서는 嘉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許可料의 문제는 주목되는 점이다.

e) 許可書 發給

外國이 승인된 申請에 설정된 制限, 條件을 受諾할 것을 國務長官에게 通告하면 國務長官은 곧 이 通報를

商務長官에게 傳達한다. 그리고 前記한 許可料의 先拂이 있으면 商務長官은 國務長官을 通하여 당해 國가의 適格한 管理에 대한 許可書를 교부한다. 이 許可書에는 당해 漁船에 적용되는 모든 條件, 制限이 記述된다

f) 制裁

許可書를 發給받은 外國漁船이 後述하는 禁止行爲를 犯하는데 使用되고 또는 民事罰의 金額, 刑事罰金이 支拂되지 않고 또는 그 期限이 경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商務長官은 (A) 許可를 取消할 수 있고(將來의 一定期間 許可書發給을 禁止할 수도 있다) (B) 適正한 期間 許可를 停止할 수 있고 (C) 條件 및 制限을 追加할 수 있다.

許可書가 民事罰의 金額의 支拂로 停止된 경우 그 金額과 利子의 支拂이 있으면 商務長官은 그 停止를 解除하여야 한다.

5. 禁止行爲

(1) 어떤 사람이

① 이 法律의 規定, 이 法律에 따라서 公布된 規則 또는 許可에 違反하는 것.

② 許可의 取消後 혹은 許可의 停止期間中에 漁業에 從事하는 것.

③ 行政國際漁業協定의 規定 또는 그것에 基한 規則에 違反하는 것.

④ 權限있는 公務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公布된 規則, 許可, 協定의 團東을 위하여 搜索, 臨檢을 行할 目的으로 그 사람의 所屬漁船과 乘船하는 것을 拍査하는 것.

⑤ 搜索, 臨檢하는 權限있는 公務員에게 暴行, 反抗, 反對, 妨害, 強迫 또는 干涉하는 것.

⑥ 禁止行爲에 대한 合法的인 逮捕에 反抗하는 것.

⑦ 이 法律에 基한 規則, 許可 또는 協定에 違反하여 漁獲 또는 保持한 魚類를 船隻, 輸送, 販賣의 請約 販賣, 購入, 輸入, 輸出 또는 保管, 管理 혹은 所有하는 것.

⑧ 他人의 禁止行爲에 대한 犯法行爲를 알며서 그 逮捕, 또는 拿捕를 妨害, 遷滯 또는 汎止하는 것.

(2) 外國漁船, 또는 그 所有者 및 經營者가

① 美領海內에서 漁業에 종사하는 것.

② 無許可로 漁業保存區域 内에서 漁業에 從事하고 또는 同水域以遠의 遷河性 魚種 또는 大跑棚 漁業資源을 대상으로 하여 漁業에 종사하는 것은 違法이다.

이러한 禁止行爲를 犯하였다고 商務長官이 認定하는 者는 商務長官에 의하여 民事罰이 賦課되는데 그 金額은 25,000弗을 超過할 수 없다. 但 繼續되는 每日 每

美國의 漁業 保存・管理法

日은 別個의 違反을 構成한다. 實際의 罰金額은 商務長官의 裁量에 의하여 犯한 禁止行爲의 性質, 事情, 程度, 重大性 그리고 違反者에 관해서는 有責의 程度前科, 支拂能力 및 公正이 要求하는 기타 事項을 고려해서 決定한다.

民事罰이 賦課된 者가 이에 不服일 경우에는 이러한 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적당한 연방法院에 抗訴通告書를 提出하여 再審을 밟을 수 있다. 商務長官의 決定이 充分한 證據로써 지탱되지 않을 때에는 民事罰은 破棄된다.

商務長官은 이러한 民事罰을 條件附 또는 無條件으로妥協하여 處理하고 變更하고 또는 免除할 수 있다.

上記 禁止行爲中 (1)의 ④·⑤·⑥·⑧ 및 (2)의 ①·②의 行爲를 罰한 者는 刑事犯으로 한다.

禁止行爲中 (1)의 ④·⑤·⑥·⑧은 5萬弗을 넘지 아니하는 罰金刑 혹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禁錮刑 또는双方이 적용된다. 단 위험한 武器를 사용하여 困束된 있는 公務員에게 육체적 傷害를 입히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肉体的으로 절박한 恐怖狀況에 빠지게 한 경우에는 100,000弗까지의 罰金刑 또는 10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禁錮刑 혹은 그双方이 적용된다.

禁止行爲中 (2)의 犯罪는 100,000弗 以下의 罰金刑 또는 1年을 넘지 아니하는 禁錮刑 혹은 그双方이 적용된다.

禁止行爲와 관련해서 또는 그 結果로 인해 어떤 한 方法으로든 使用된 漁船(漁具, 裝備, 屬具, 船用品 및 荷物를 包含)은 그 全部 또는一部를 没收할 수 있으며 魚類는 没收한다.

6. 輸入禁止:

관련된 外國이 美 漁船을 그 水域에서 禁止하고 漁業의 保存 및 管理는 무관계한 制限, 條件을 부과하고 또는 協定을 위반해서 또는 協定에 의한 權限없이 美漁船을 拿捕한다고 國務長官이 決定, 證明할 때에는 財務長官은 그 國家產의 魚類 및 魚類製品의 輸入을 禁止하도록 하였다.

III. 韓・美 漁業協定

韓・美兩國은 1977年 3月 3일부터 發効하는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의 美國沿岸에서의 漁業에 관한 協定」을 1977年 1月 4일 워싱톤에서 체결하였다. 이 協定은 本文 15조 附屬書 2. 合議議事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內容은 本高 4.의 行政國際漁業協定에 서 論한 것과 大同 小異한 것인데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協定은 序頭에서 美國이 그 沿岸 200海里 内에서 모든 魚船에 대하여, 또 美國에 속하는 大陸棚 生物資源에 대하여 그리고 美國에 起源하는 遷河性 魚種의 全回遊範圍 内에서 排他的 漁業管理權을 가지고 있음을 兩國이 認定하고 있음을 明白히 하고 大韓民國의 漁船은 本協定의 規定에 따라 美國의 漁業保存水域內에서 어로행위가 허용된다고 하았다(3조).

美國政府는 매년 ① 魚族資源의 相互依存性, 國際的으로 認定된 기준 및 기타 모든 科學요소를 고려하여 最大로 利用可能한 科學的 證據에 立脚한 각 어업별 종류 용어회향, ② 각 어업에 대한 미국 어선의 漁獲能力, ③ 年間 총허용어획량중 미국 어선에 의하여 어획되지 아니한 특정어업이 차지하는 部分, ④ 大韓民國에 提供될 수 있는 上記分의 削當을 決定해서 韓國政府에 稽基에 通報한다. 또 美國政府는 漁業別 適正生產維持와 남획방지에 必要한 措置를 每年 決定하고 韓國漁船은 이러한 保存조치와 미국 정부가 설정한 기타 條件을 遵守하여야 한다(3조).

韓國에 할당할 수 있는 잉여분 설정에 있어서 미국은 특히 傳統의 어로行爲, 漁業調查 및 魚族資源에 的毒與, 相互關心 있는 漁業資源의 保存, 管理 및 施行에 있어서의 從前의 協力 및 美國이 漁業管理權을行使하는 生物資源을 韓國漁船이 慣習적으로 漁獲하여은 경우에 經濟的混亂을 極小化할 必要生長을 고려하여 적정이용의 목표를 增進(promote) 하도록 決定하여야 한다(4조). 이외에도 韓國民이 주요동물성 담백원으로서 魚類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넣을 수 있다. (합의 의사록 1.)

2. 美國이 漁業관리를 행하는 生物資源에 대하여 어로행위에 종사한 한국 선박에 대한 年間 許可書의 申請 및 發給에 관해서는 第6조와 부속서 I에 規定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韓國政府는 각 漁船에 대한 申請書를 美國政府에 提出한다. 단 申請書 樣式은 美國政府가 提供한다.

(2) 申請書에 明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 어선의 船名 및 公式番號 또는 기타 識別資料 및 당해어선의 船主와 運營者の 姓名과 住所.

나. 톤수(tonnage) · 용적 · 속도 · 加공施設, 漁具의 形態와 数量 및 당해 漁船의 漁撈특징(fishing characteristics)에 관하여 기타 要求되는 情報.

다. 각 漁船이 漁撈行爲를 하고자 하는 각 漁業의 明細.

라. 同 許可書의 有効期間中 각 선박의豫想漁獲量

楊世植

또는 魚種別 漁獲屯數.

마. 上記한 漁撈行爲가 해하여진 海域, 季節 또는期間.

마. 기타 요구되는 關連情報.

(3) 美國政府는 申請書를 接受하면 이것을 檢討하고 漁業管理 및 保存에 관하여 必要한 條件과 制限事項 및 手數料(fee) 즉 許可料를 決定하여 韓國政府에 通報한다. 韓國政府는 上記한 條件과 制限에 대한 수락 여부 및 拒否時에는 그 事由를 美國政府에 通告한다.

韓國政府가 그 條件 및 制限事項을 수락하고 所定의 수수료를 支給하면, 美國政府는 申請書를 承認하고 각 渔船에 대한 許可書를 發給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각 渔船은 本協定과 許可書에 규정된 條件에 따라 漁撈行爲가 許可되는데, 이때 이 許可書는 特定船舶에 대하여 發給되는 것이므로 讓渡할 수 없다.

韓國政府가 特定條件 및 制限事項에 대한 拒否事由를 通告하는 경우 兩國政府는 이에 관하여 協議하고 韓國정부는 이에 따라 修正된 申請書를 提出한다.

(4) 韓國 정부는 本協定에 따른 操業에 있어서 다음 事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8조).

① 許可書를 조타실에 잘 보이도록 置시한다.

② 美國政府가 결정하는 적절한 位置測定 및 確認裝置를 해당 각 선박에 設置하고 또한 가동 상태로 유지한다.

③ 지정된 美國의 관측자(observer)가 요청시에는 渔船에의 乘船을 허용하고 乘船期間 동안 그 船舶의 士官級에 해당하는 地位를 부여하고 관측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發生한 費用을 美國 정부에 支給한다. 관측자의 임무는 크기, 체중 및 어령구성 등의 種의 구상評價를 위한 渔獲物標本調査 기타 生물학적 자료수집 日當漁獲率測定, 어로行爲의 位置 및 기간決定, 渔具의 規模 및 어로작업 수행 상황의 관찰, 必要한 때 美國政府에 告知하는 것이다.

④ 船舶의 所有者나 運營者에 대하여 미국내에서 제기되는 모든 法的 節次를 접수하고 응답할 권한을 가진 代理人을 美國內에 指定하고 維持한다.

⑤ 美國 國民의 渔船, 渔具 또는 渔獲物의 損失 또는 毀損이 韓國漁船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決定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報賞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必要한措置를 취한다.

美國의 渔船에 의하여 야기된 한국인의 渔船·漁具 또는 渔獲物에 대한 損失 또는 毀損에 대해서는 美國의 法律 및 司法 節次를 通한 救濟조치가 適用된다(合議事錄 2).

(5) 단속 절차에 관해서는 本文 제9조, 제10조, 合議事錄 3, 4에 규정하고 있다. 위선 9조에서 美國의 단속 官吏의 乘船, 檢查를 許容하며 美國法에 의한 단속 조치에 협력하도록 韓國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韓國선박을 押留, 나포한 경우에는 美國 정부는 신속히 韓國 정부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美國官吏의 단속 조치는 조업중의 韓國 선박에 끼친 損失을 고려해서 不可避한 最小限의 것이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 要請에 美國 정부가 유의할 것을 約束하고 있다(合議事錄 3).

協定 本文 10조는 許可書의 규정을 위반한 韓國漁船 또는 그 소유자나 운영자에 대하여 美國法에 따라 적절한 惩罰을 부과할 것과 美國政府의 단속조치로 인하여 渔船과 船員이 입게 되는 經濟的 損失을極少化하기 위하여 합당한 保證金 또는 保證物의 預置가 있으며 渔船과 船員을 신속히 釋放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또 渔業規制 위반이 刑事犯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懲役刑 또는 어떠한 형태의 体刑도 포함되지 않도록 美國 정부의 關係代表가 法院에 勸告할 것임을 約束하고 있다(合議事錄 4).

(6) 本文 11조는 美國의 渔業 management에 속하는 生物資源의 management, 保存을 위한 科學的 調査에 韓國政府가協力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익년 8月 1일까지 부속서Ⅱ 1에 의하여 年間 渔獲量 및 努力量統計를 美國에 提供하는 외에 익월末까지 臨時 月間 渔業情報 to 제공하며, 부속서Ⅱ, 1에 의한 生物學的統計의 提供義務를 진다. 但 本協定의 發効日로부터 1년의 過渡期間中에는 韓國政府의 資料 提供能力가 불편해지 과도措置가 강구될 수 있음을 合議事錄에 摘記하고 있다.

(7) 上記한 事項外에도

① 美國의 渔業 保存水域內에서 海洋生物의 渔獲行爲를 禁止(7조)하고 있고

② 韓國의 渔業 保存水域 또는 이에 상응하는水域에 서의 美國漁船 또는 美國人의 渔撈行爲는 互惠主義原則에 의하여 許容된다고 하고(13조)

③ 韓國漁船은 美國의 관세 법규에 따라 美國港口에 入港하여 補給品 및 用役을 구득할 수 있고

④ 韓國漁船의 轉賣作用에 관해서는 轉賣區域을 許可書 또는 기타 관세文書에 규정될 것임을 約束하고

⑤ 本協定의 有効期間은 1977年 3月 3일부터 發効され 双方의 정부가 12개월 前의 事前終了 通告를 行함으로써 終了되지 아니하는 한 1982년 7월 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되 効力發生 2年後 또는 第3차 海洋法

美國의 漁業 保存·管理法

會議에서 採擇된 多邊條約의 締結時, 兩國政府에 의하여 再檢討하도록 하였다(15조).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本協定의 內容은 美國의 國內法인 漁業保存, 管理法을 그대로 옮긴 것에 不過하며 刑事犯에 대한 약간의 양보—그것을 양보라고 한다면—외에는 별로 부연할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要컨대 本 協定의 意義가 美國沿岸의 200海里 水域에 대하여 美國의 主權的인 排他的 漁業管轄權을 認定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韓美間의 合意의

形式을 取한 本協定에 基하여 韓國은 美國距岸 200海里水域에서 漁撈行爲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그 200海里 水域은 美國의 國內法의 適用範圍임을 相互確認함으로써 實은 本協定의 意義는 國際的 相互平等한 合意의 性格을殆半喪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距岸 200海里 水域이 종래의 公海개념에서 漁業에 관한 한 領海의 인 것으로 變質한 事實을 明確히 認識하는 것이 必要하다 할 것이다.

※ 本稿는 編輯者の 要請에 의하여 美國의 漁業保存管理法의 解說을 그 主된 目的으로 하였으므로 一切의註記를 생략하였다. 本稿는 『의 韓美 漁業協定을 除하고 釜山水產大學 人文·社會科學 論文集 第十七輯所載의 第者의 論文‘美國의 1976年 漁業保存·管理法’의 內容을 抄記한 것이라고 좀더 仔細한 內容과 文獻的 資料의 背景은 同論文을 參照하여 주시기 바란다.